# 변경 대비표

□ **대상펀드명 :** 트러스톤 매크로채권전략 증권투자신탁[채권]

□ **변경 사항 :** ① 제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②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③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23. 9. 22.

□ **변경 내용**

| 구분 | 정정사유 | 정정전 | 정정후 |
|---|---|---|---|
| 요약정보 | | | |
| 투자비용 |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<br>제 1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| -<br>- | **2023. 7. 31. 기준**<br>**2023. 8. 29. 기준** |
|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수익률) | 제 1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| - | **2023. 8. 29. 기준** |
| 운용전문인력 |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 | - | **2023. 8. 31. 기준** |
| 투자자 유의사항 |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|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 **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**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|
| 매입방법 |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17시 이전(경과후) : 제2(3)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| 17시 이전(경과후) : **2(3)영업일** 기준가격으로 매입 |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환매방법 |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17시 이전(경과후) : 제3(4)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3(4)영업일에 지급 | 17시 이전(경과후) : **3(4)영업일** 기준가격으로 **3(4)영업일**에 지급 |
|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| | | |
|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| 연혁 업데이트 | 〈신 설〉 | **2022.8.30 : 투자신탁 최초설정** |
| 5. 운용전문인력<br>가. 운용전문인력 |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 | - | **2023. 8. 31. 기준** |
| 5. 운용전문인력<br>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|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 | - | **2023. 8. 31. 기준** |
|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br>가. 투자 대상 |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| 나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)~9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**로 하며, 금융투자업규정 제4-54조의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**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|
| |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| 〈신 설〉 | **증권대차거래 목적 등 기재** |
|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br>나. 투자제한 |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.<br>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,5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|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.<br>(가)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),3),4),5)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**로 하며, 금융투자** |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| | 적합한 것으로 봄 | **업규정 제4-54조의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)**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|
|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br>다. 기타 투자위험 |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<br>또한,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“트러스톤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|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: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년**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**)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년**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**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<br>또한,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|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| | | “트러스톤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|
| 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<br>가. 매입 |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br>17시 이전(경과후)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제2(3)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| 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br>17시 이전(경과후) 자금을 납입한 경우 : **2(3)영업일**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|
| 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<br>나. 환매 |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<br>17시 이전(경과후) 환매를 청구한 경우: 제3(4)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(4)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| 2)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<br>17시 이전(경과후) 환매를 청구한 경우: **3(4)영업일**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**3(4)영업일**에 환매금액 지급 |
|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br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|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<br>제 1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| -<br>- | **2023. 7. 31. 기준**<br>**2023. 8. 29. 기준** |
|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| | | |
| 1. 재무정보 | 제 1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| - | **2023. 8. 29. 기준** |
|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| 제 1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| - | **2023. 8. 29. 기준** |
|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| 제 1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| - | **2023. 8. 29. 기준** |
|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| | | |
|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br>가. 회사 개요 |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 | - | **2023. 8. 31. 기준** |
|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br>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|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 | 제24기(2021.12.31)<br>제23기(2020.12.31) | **제25기(2022.12.31)**<br>**제24기(2021.12.31)** |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br>라. 운용자산 규모 | 최근 기준으로 업데이트 | - | **2023. 8. 31. 기준** |
|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| | | |
| 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<br>가. 수익자총회 등 |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<br>제5영업일 | 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<br>**5영업일** |
|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<br>나. 임의해지 |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(1)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br>① ~ ② (생 략)<br>③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br>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| (1)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br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br>③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1년**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**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br>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**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**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|
|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<br>나. 수시공시 |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(2) 수시공시<br>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 ·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의 | (2) 수시공시<br>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 ·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 · 판매회사의 |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| | 본·지점,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<br>① (생 략)<br>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<br>③ ~ ⑦ (생 략)<br>⑧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br>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br>⑩ (생 략) | 본·지점,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.<br>① (현행과 같음)<br>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**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**<br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br>⑧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년**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**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br>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**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**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br>⑩ (현행과 같음) |